화성시 공고 제 2026 - 3386호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화 성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20.(화) (공휴일 포함 7일)

2. 사업내역

사 업 명 : 화성남양뉴타운 B-5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가. 사업주체 : 우미건설㈜ 대표 곽수윤, 김영길, 김성철 ☎ 1588-9707 ※ 본사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추후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이후 사업주체가 리츠로 변경되어 계약이 승계 될 예정임.이를 인지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람. **나. 설 계 자** :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영돈 ☎ 02-2189-5800 **다. 시 공 자** : 우미건설㈜ 대표 곽수윤, 김영길, 김성철 ☎ 1588-9707 **라. 사업개요** ○ 위 치 : 화성남양뉴타운 공동주택용지 B-5BL (만세구 남양읍 북양리 690) ○ 대지면적 : 48,103.4㎡ ○ 연 면 적 : 117,924.128㎡ ○ 규 모 : 아파트 13개동(지하2층, 지상15층) 및 부대복리 · 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 : 674세대 ○ 공사기간(예정) : 2026. 12. 1. ~ 2029. 2. 28.(27개월) ○ 전기공사기간(예정) : **2027. 01. 01. ~ 2029. 02. 28.(26개월)** ○ 사업승인일(최초) : 2021. 3. 23. (사업승인 접수일 : 2020. 6. 22.) ○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26. 9. 30. **※ 상기내용은 인 · 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마. 사 업 비** ○ 총사업비 : 378,294,000천원 ○ 대 지 비 : 59,267,000천원 ○ 전기공사비 : 15,992,293천원(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 부가가치세 미포함) ※ 전기공사비는 부가가치세 미포함(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3호) ※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6호(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함 **바. 입찰가격 산출** ○ **감리대가 : 647,658,370원** ○ **기초금액 : 628,228,619원**(감리대가의 **97%** 적용, 원단위 미만 절사)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 산출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금액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공 종	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비 고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3개월	14개월	15개월	16개월	17개월	18개월	19개월	20개월	21개월	22개월	23개월	24개월	25개월	26개월	27개월	
전체공정 (27개월)	(26.12.01)																									(29.02.28)		2026.12.01~2029.02.28
건축공사 (27개월)	(26.12.01)																									(29.02.28)		2026.12.01~2029.02.28
구조체공사 (16개월)			(27.02.01)														(28.05.31)											2027.02.01~2028.05.31
토공사 (24개월)	(26.12.01)									(27.10.31)				(28.01.01)												(29.02.28)		2026.12.01~2027.10.31 2028.01.01~2029.02.28
설비공사 (26개월)		(27.01.01)																								(29.02.28)		2027.01.01~2029.02.28
전기공사 (26개월)		(27.01.01)																								(29.02.28)		2027.01.01~2029.02.28
정보통신공사 (26개월)		(27.01.01)																								(29.02.28)		2027.01.01~2029.02.28
소방공사 (26개월)		(27.01.01)																								(29.02.28)		2027.01.01~2029.02.28

※ 상기 배치계획은 실 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3.(금)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8. 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 서류와 신청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보완은 불가하오니 불이익(평가제외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8. 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됨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인증 절차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나라장터 시스템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10. 23.(금) 14:00 이후 (입찰진행관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나.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2)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예비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순위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 세부평가기준 [별표3]의 [부표 3-2] 적격심사기준에 따름

4) 개찰결과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 날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하며 결과에 대한 인터넷 및 유선 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6.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10. 26.(월) 09:00 ~ 2026. 10. 28.(수)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화성시청 주택정책과(본관 4층)**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예비순위(1~5순위) 업체는 사실확인 서류 제출 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본 1부를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6호의2 서식]

2) 자기평가서 [별지 제7호 서식](총괄표)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서(협회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29.(목) 09:00 ~ 2026. 11. 2.(월)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열람방법 : **화성시청 주택정책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6호의2 서식]

2) 자기평가표 [별지 제7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이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을 제출하고 위임받은 자에 한하여 열람 가능(열람서류 촬영 불가)함.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타업체 열람문의 · 유선문의 등은 받지 않음.

라. 이의신청 방법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이의신청 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 명기 제출 시 대상 제외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우편·팩스·전화의 방법으로 접수받지 않음에 유의할 것)

4)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5)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기 기한 내에 감리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는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방문 및 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6)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조치 함

8.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류 및 서약서 1부(본 공고상의 별첨1 양식)

2) 자기평가서 [별지 제7호 서식](총괄표)(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연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4) 감리원 배치계획표 : 본 공고상의 별첨4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제출

5)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상기 제출서류 중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1) 자기평가서 [별지 제7호 서식](총괄표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2)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

3)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4)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 (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5) 행정제재 여부 증명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해당하는 경우)

7) 업무중첩도 관련 배치확인 서류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8)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 (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10)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 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 . 무 확인서(경력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11)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용이한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위하여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이고,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기 바람

12) 그 밖의 응모서류 : 감리업자선정 신청서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뒷면 사실확인 서류 일체를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9.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중 자격증 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 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 일부를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 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일자는 모집공고일로 합니다.

다.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1)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참여사업명 및 직무분야,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함

2)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 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 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세부평가기준 [별표 3] [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에서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참여감리원의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치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함

라.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1) 소방, 정보통신 등 타 법령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합산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2) 전기 상주감리원(책임, 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 분야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3) 타 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4)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5) 입찰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하고 허위 기재 시 탈락 처리함

마. 상기 8. 가항의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8. 나항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1)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2)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3)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4)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바. [별첨 2]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3]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 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별첨 2,3]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나. 평균 유동비율 : 125.42%

※ 구비서류 중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전기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11.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가.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1)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우선순위(예비 1~5순위) 선정 및 통보 ⇒

사실확인 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 평가하므로 우선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업자 선정기준

1) 세부평가기준 및 같은 기준 제3조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3])에 따라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같은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따라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 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 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규정에 따름
4) 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제출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5) 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우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2. 감리업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2)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 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 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기산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3. 기타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2) 공고일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확인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각 협회에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신청을 할 수 없음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사항으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4) 교육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 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 한하여 지역가점 가산(1.5점) (지역가산은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함)

바.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2,3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확인)

사.「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별표 2의2에 따라 보조감리원의 배치대상이 아닌 경우(800세대 미만) 보조감리원의 평가는 만점처리 함

아.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 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 과업 수행계획			제 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	2.7	2.4	2.1	1.8	0
평가기준	내용	수행계획	적합		부적합			
		배치계획	적합		부적합			
	쪽 수 (표지·간지·목차 제외)		12쪽 이상	10~11쪽	9쪽 이하			-

구 분 / 작업기법			제 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 수			2	1.8	1.6	1.4	1.2	0
평가기준	내용	문제점 조치사항 대책방안	적합		부적합			-
	쪽 수 (표지·간지·목차 제외)		6쪽 이상	3~5쪽	2쪽 이하			-

자.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 불가)

차.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를 감리업자로 선정합니다.

타. 감리업자 선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 간에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파.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하.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함을 알려드립니다.

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평가표 등이 예전 자료일 경우 최신기준 적용)

너. 감리대가 지급은 실착공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더. 제출된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고, 제출된 자료와 증빙자료의 기재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 선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러. **화성시는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하여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 [화성시 고시 제2024-814호(2024. 10. 11.)]를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머. 감리자는 골조공사 완료 후 또는 공정률이 60% 이상인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참여형 감리보고제'를 신청할 시 분기별 감리 수행내용의 설명 및 입주예정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분기별 감리보고서에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 모집공고에 대하여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 우리시 홈페이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서 공고내용의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시청 주택정책과(☎031-5189-32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1부.
2.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1부.
3. 제출서류 양식 및 참고자료 각 1부.

[붙임 1]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전 체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타법감리	감리제외
총 공사비	순 공 사 비	토목공사	14,168,277	14,168,277				
		건축공사	122,319,833	122,319,833				
		기계설비공사	11,863,578	11,863,578				
		전기공사	13,718,179		13,718,179			
		정보통신공사	3,406,990				3,406,990	
		소방설비공사	7,106,855			7,106,855		
		소 계	172,583,712	148,351,688	13,718,179	7,106,855	3,406,990	-
	일반관리비		13,160,531	11,312,696	1,046,092	541,940	259,803	-
	이 윤		15,449,319	13,280,121	1,228,022	636,190	304,986	-
	소 계		201,193,562	172,944,505	15,992,293	8,284,985	3,971,779	-
간접비	설 계 비		2,655,638					2,655,638
	감 리 비		4,500,013					4,500,013
	일반분양시설 경비		5,347,151					5,347,151
	분담금 및 부담금		1,467,053					1,467,053
	보 상 비		-					-
	기타 사업비성 경비		103,557,145					103,557,145
	소 계		117,527,000	-	-	-	-	117,527,000
기 타	대 지 비		59,267,000	-	-	-	-	59,267,000
	부가가치세액		306,438	-	-	-	-	306,438
총사업비 계			378,294,000	172,944,505	15,992,293	8,284,985	3,971,779	177,100,438

1) 순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임
2)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한 정의 및 산정방법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에 따름
3) 부가가치세액의 정의의 산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름
4) 간접비란 사업비 중 총공사비를 제외한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등 사업비성 경비를 말하며, 세부 비목은 다음과 같음.
 · 일반분양시설경비 : 시공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 분담금 및 부담금 : 인입분담금(가스, 전기, 수도, 지역난방), 진입도로, 학교용지확보부담금
 · 보상비 : 이주대책비, 이주보상비
 · 기타사업비성 경비 : 제세공과금, 측량교통환경영향평가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건물보존등기비 및 입주관리비, 감정평가수수료, 분양임대보증 및 하자보증수수료 등 기타 사업경비
 · 대지비 : 대지구입비, 대지 구입 관련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붙임 2]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단위: 천원, VAT별도)

구 분	분 야	공 종	전 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순 공사비	전 기 (15개 공사)	수변전설비공사	946,876	946,876		
		전력간선설비공사	1,472,919	1,472,919		
		동력설비공사	1,052,085	1,052,085		
		전열설비공사	1,262,502	1,262,502		
		전등설비공사	1,157,293	1,157,293		
		전력제어설비공사	84,167	84,167		
		조명제어설비공사	94,688	94,688		
		접지 및 피뢰설비공사	315,625	315,625		
		옥외전력공사	126,250	126,250		
		비상전원설비공사	115,729	115,729		
		Cable Tray 설비공사	420,834	420,834		
		배전반설비공사	841,668	841,668		
		옥외조명설비공사	315,625	315,625		
		통합배선공사	2,314,587	2,314,587		
		승강기설비공사	3,197,331	3,197,331		
		소 계	**13,718,179**	**13,718,179**	**-**	**-**
	토목공사	13개 공종	14,168,277			14,168,277
	건축공사	23개 공종	122,319,833			122,319,833
	기계설비공사	9개 공종	11,863,578			11,863,578
	정보통신공사	8개 공종	3,406,990			3,406,990
	소방설비공사	2개 공종	7,106,855			7,106,855
	소 계		**158,865,533**	**-**	**-**	**158,865,533**
일반관리비			13,160,531	1,046,092	-	12,114,439
이 윤			15,449,319	1,228,022	-	14,221,297
총공사비계			**201,193,562**	**15,992,293**	**-**	**185,201,269**

[붙임 3]

접수번호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 감리업자(전기) 선정 신청

- 화성남양뉴타운 B-5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2026. . .

[감리회사명]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개요

사 업 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		
설계업자	대표자		상 호		
	주 소				

2. 감리업자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보 조				
보 조				
비상주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구비서류 : 뒤쪽참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첨부서류

1. 자기평가서 1부.
2. 감리비 입찰서 1부.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감리업자	①유사용역 수행실적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②행정제재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③재무상태 건 실 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④기술개발 및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⑤작업계획및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⑥교체빈도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⑦지 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감리원	①등급/ 책임감리원가점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②경 력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③행정제재	감리원경력확인서
	④업무중첩도.교체빈도. 부실벌점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⑤교육실적	감리원경력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별지 제8호 서식]

감리비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자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인)

화성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설계(감리)업체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A÷B (%)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		총매출액(전기부문)	
		합계금액(A)		합계금액(B)	
		3차년	투자액	3차년	총매출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총매출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총매출액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별지 제10호 서식] (해당업체에한함)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공사중지 확인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		

2. 감리업자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확인신청 내용

가.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비 고
책 임				
보 조				
비상주				

나. 확인사항

사 유	비 고	확인(√)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재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2개월 이상 공사중지	공사 중지일 : 년 월 일 재공사 예정일 : 년 월 일	

위 사업이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라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위 감리원은 현재 ( )월간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 되었으므로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별지 제7호 서식]

Ⅰ. 총괄표

자 기 평 가 서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배점	신청인	시.도	비고
1. 참여감리원	50	가. 책임 감리원	(1)등급	-			
			(2)경력 및 실적	25			
		나. 보조 감리원	(1)등급	-			
			(2)경력 및 실적	14			
		다. 비상주 감리원	(1)등급	2			
			(2)경력 및 실적	9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3. 신 용 도	10	가. 영업정지	(1)감리업체	4			
			(2)참여감리원	3			
		나. 재정상태 건실도	(1)자본비율	1.0			
			(2)유동비율	2.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가. 개발실적		4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4			
		다. 교육실적		2			
5. 업무중첩도	10	가. 상주감리원		6			
		나. 비상주감리원		4			
6. 교체빈도	5	가. 감리업체		2.5			
		나. 참여감리원		2.5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가. 과업수행계획		3			
		나. 작업기법		2			
8. 가점.감점	- 1 -5	가. 지 역		(1.5)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다. 부실벌점		(-5)			
합 계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짓 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평점은 당해업체가 기재하고, 평가는 기재하지 말 것. 이하 같음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1. 항목별 평가기준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
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h colspan="2">평가점수
신청자 | 선정권자</th></tr>
<tr><td colspan="2">가. 참여감리원</td><td>50</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가.
참여
감리원</td><td>(1)
책임 감리원</td><td>[25]</td><td>○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배점기준
<table><tr><td>규 모</td><td colspan="5">경력년수 및 점수</td></tr><tr><td>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td><td>6년이상</td><td>6년미만
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
3년이상</td><td>3년미만</td></tr><tr><td>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td>10년이상</td><td>10년미만
8년이상</td><td>8년미만
6년이상</td><td>6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r><tr><td>1,200세대이상</td><td>15년이상</td><td>15년미만
12년이상</td><td>12년미만
9년이상</td><td>9년미만
6년이상</td><td>6년미만</td></tr><tr><td>점 수</td><td>25</td><td>22</td><td>19</td><td>16</td><td>13</td></tr></table>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 표의 해당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table><tr><td>규 모</td><td>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td><td>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td>1,200세대이상</td></tr><tr><td>년 수</td><td>2년</td><td>3년</td><td>4년</td></tr></table></td><td></td><td></td></tr>
<tr><td>㉮
등 급</td><td>(-)</td><td></td><td></td><td></td></tr>
<tr><td>㉯
경 력
및
실 적</td><td>(25)</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colspan="3">(1) 등 급 :
(2) 경력 및 실적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별첨 2</td></tr>
<tr><td rowspan="4">(2)
보조
감리원</td><td>[14]</td><td>○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배점기준
<table><tr><td>규 모</td><td colspan="4">경력년수 및 점수</td></tr><tr><td rowspan="2">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td>3년이상</td><td colspan="2">3년미만
2년이상</td><td>2년미만</td></tr><tr><td>14</td><td colspan="2">12</td><td>10</td></tr><tr><td>1,200세대이상</td><td>6년이상</td><td>6년미만
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r><tr><td>점 수</td><td>14</td><td>12</td><td>10</td><td>8</td></tr></table>
※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td><td></td><td></td></tr>
<tr><td>㉮
등 급</td><td>(-)</td><td></td><td></td><td></td></tr>
<tr><td>㉯
경 력
및
실 적</td><td>(14)</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colspan="3">(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별첨 2</td></tr>
<tr><td rowspan="2"></td><td>(3)
비상주
감리원</td><td>[11]</td><td>○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td><td></td><td></td></tr>
<tr><td>㉮</td><td>(2)</td><td></td><td></td><td></td></tr>
</table>

<table>
<tr><td rowspan="3"></td><td>등 급

㈏
경 력
및
실 적</td><td>(9)</td><td colspan="4">○ 배점기준
<table><tr><td>경 력</td><td>10년 이 상</td><td>10년 미 만
7년 이 상</td><td>7년 미 만
4년 이 상</td><td>4년 미 만</td></tr><tr><td>점 수</td><td>9</td><td>7</td><td>5</td><td>3</td></tr></table>※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colspan="4">(1) 등 급 :</td></tr>
<tr><td colspan="5">(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자료 -별첨 2</td></tr>
<tr><td colspan="2">나. 유사용역
수행실적</td><td>10</td><td colspan="4"></td></tr>
<tr><td>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td><td>감리
업체
실적</td><td>(10)</td><td colspan="4">○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배점기준
<table><tr><td>규 모</td><td colspan="5">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td></tr><tr><td>1,200세대이상</td><td>80이 상</td><td>80미 만
64이 상</td><td>64미 만
48이 상</td><td>48미 만
32이 상</td><td>32미 만</td></tr><tr><td>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td><td>36이 상</td><td>36미 만
30이 상</td><td>30미 만
24이 상</td><td>24미 만
18이 상</td><td>18미 만</td></tr><tr><td>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td><td>12이 상</td><td>12미 만
9이 상</td><td>9미 만
6이 상</td><td>6미 만
4이 상</td><td>4미 만</td></tr><tr><td>점 수</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table></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colspan="4">○ 연면적 : ㎡ ※ 산출근거자료- 별첨 3</td></tr>
<tr><td colspan="2">다. 신용도</td><td>10</td><td colspan="4"></td></tr>
<tr><td>다.
신용도</td><td>(1)
영업정지

㈎
감리
업체

㈏
참여
감리원</td><td>[7]

(4)

(3)</td><td colspan="4">○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colspan="4">(1) 감리 업체 :</td></tr>
</table>

(2) 참여감리원 :

(2) 재정상태 건실도 [3]

㈎ 자본비율 (1.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배점기준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 유동비율 (2.0)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ㅇ 배점기준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산출근거

(1) 자본비율 : = %

(2) 유동비율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0]

(1) 개발 실적 (4)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ㅇ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기술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4)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table>
<tr><td></td><td>(3)
교육 실적</td><td>(2)</td><td>-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td><td>3%이상</td><td>3.0%미만
2.5%이상</td><td>2.5%미만
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td></tr><tr><td>점 수</td><td>4</td><td>3.5</td><td>3.0</td><td>2.5</td><td>2.0</td></tr></table>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 rowspan="3">산출근거</td><td colspan="3">가. 개발실적 : = 건 × 배점</td><td></td></tr>
<tr><td colspan="3">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td><td></td></tr>
<tr><td rowspan="2">다. 교육실적</td><td colspan="2">-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점</td><td></td></tr>
<tr><td colspan="2">-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점</td><td></td></tr>
<tr><td colspan="2">마. 업무중첩도</td><td>[10]</td><td colspan="3"></td><td></td></tr>
<tr><td>마.
업무
중첩도</td><td>(1)
상주
감리원</td><td>[10]
(6)</td><td>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td><td>책임감리원</td><td>보조감리원</td></tr><tr><td>점 수</td><td>4</td><td>2</td></tr></table>※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table><tr><td>구 분</td><td>6개소미만</td><td>6개소</td><td>7개소</td><td>8개소</td><td>9개소이상</td></tr><tr><td>점 수</td><td>4</td><td>3</td><td>2</td><td>1</td><td>0</td></tr></table>※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td><td></td><td></td></tr>
<tr><td></td><td>(2)
비상주
감리원</td><td>(4)</td><td></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 rowspan="2">산출근거</td><td colspan="3">가. 상 주 감 리 원 :</td><td></td></tr>
<tr><td colspan="3">나. 비상주감리원 : = 개소</td><td></td></tr>
<tr><td colspan="2">바. 교체빈도</td><td>[5]</td><td colspan="3"></td><td></td></tr>
<tr><td>바.
교체 빈도</td><td>(1)
감리 업체</td><td>[5]
(2.5)</td><td>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table><tr><td>교체빈도
(%)</td><td>10%미만</td><td>10%이상
20%미만</td><td>20%이상
30%미만</td><td>30%이상</td></tr><tr><td>점 수</td><td>2.5</td><td>2</td><td>1.5</td><td>0</td></tr></table></td><td></td><td></td></tr>
<tr><td></td><td>(2)
참여</td><td>(2.5)</td><td>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td><td></td><td></td></tr>
</table>

<table>
<tr><td></td><td>감리원</td><td></td><td>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산출근거</td><td colspan="4">가. 감 리 업 체 : = %</td></tr>
<tr><td colspan="4">나. 참여감리원 : = 회 × 배점</td></tr>
<tr><td colspan="2">사. 작업계획 및 기법</td><td>[5]</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사. 작업계획 및 기법</td><td>(1) 과업 수행계획</td><td>[5]
(3)</td><td rowspan="2">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d>미제출</td></tr><tr><td>점 수</td><td>3</td><td>2.7</td><td>2.4</td><td>2.1</td><td>1.8</td><td>0</td></tr></table>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table><tr><td>구 분</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d>미제출</td></tr><tr><td>점 수</td><td>2</td><td>1.8</td><td>1.6</td><td>1.4</td><td>1.2</td><td>0</td></tr></table></td><td></td><td></td></tr>
<tr><td>(2) 작업기법</td><td>(2)</td></tr>
<tr><td colspan="2" rowspan="2">산출근거</td><td colspan="4">가. 과업수행계획 :</td></tr>
<tr><td colspan="4">나. 작 업 기 법 :</td></tr>
</table>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1.5] [1.0] [-5]	세부평가방법	평가점수	
				신청자	선정권자
가점	(1) 지역	(1.5)	ㅇ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2) 책임 감리원	(1)	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산출근거		(1) 지 역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감점	부실 벌점	(-5)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산출근거		ㅇ 부실벌점 :		

[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경력년수를 10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이 부표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나. 경력년수를 8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2)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3) 발주자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다. 경력년수를 6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라. 경력년수를 40% 인정하는 경력

(1) 건축물시설(2)에 대한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경력

※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위 표의 시공경력은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관련 경력 인정범위는 시.도지사가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적용할 수 있다.

※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인정하되 참여사업명, 참여분야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복수 기재 및 불분명한 경우와 공사 또는 용역이 중단된 기간 그리고 “전기(10)”이외에 소방.정보통신 등의 직무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시설[2]			
20	공공건물	25	의료시설
21	주거시설	26	종교시설
22	업무시설	27	체육시설
23	판매시설	28	교육.연구시설
24	숙박시설	29	기타건축시설

2.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평가방법은 위 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나.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예 시>

○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연면적(㎡)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 = 25,000(㎡)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연면적(㎡)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05.10.1~'10.9.30)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 = 40,000(㎡)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 실적은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에 기재된 실적을 인정하며,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로 구분.기재된 실적과 전기(10)이외에 소방.정보통신 등 다른 직무분야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재정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다.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로 확인한다.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개발실적 평가

: 개발실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5. 시.도지사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당해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교체빈도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된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시) 교체빈도 산정식

$$\text{ㅇ교체빈도 : } \frac{\text{최근 1년간 교체건수}}{\text{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times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의 교체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2)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 작업계획 및 기법은 당해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하여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당해 공사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8. 가점 및 감점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지역가점은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한다.

나.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다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에는 1점, 기능장인 경우에는 0.8점, 기사인 경우에는 0.7점, 산업기사인 경우에는 0.5점을 각각 가점한다.

다.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부표 3-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제10조의3제2항관련)

1. 총 괄

구 분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사업수행 능력평가	30점	50점	70점
입찰가격	70점	50점	30점

2. 세대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 능력평가	3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30$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70점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70-3×｜(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별첨 1]

감리업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전력시설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하게 계산된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 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고 제출한 자료에는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감리업자 선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정대상 제외 및 취소,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등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세부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 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향후 감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첨 2]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구분	경력사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일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책임감리원							
	[부표3-1]제1호 가+나+다목 **소계**				일 년		
	[부표3-1]제1호 라목(안전관리경력) **소계**				일 년		
	합 계				일 년		

구분	경력사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일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보조감리원							
	합 계				일 년		

구분	경력사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일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비상주감리원							
	[부표3-1]제1호 가+나+다목 **소계**				일 년		
	[부표3-1]제1호 라목(안전관리경력) **소계**				일 년		
	합 계				일 년		

[별첨 3]

○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 실적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연번	용 역 명	감리기간	연면적(㎡)		적용요율(%)		환 산 연면적 (㎡)	평 가
			주거시설	주거시설외	환산비율 (감리수행기간/ 전체감리기간)	이행비율 (도급비율)		
합 계								

※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

[별첨 4]

(예시)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 용 역 명 :

○ 전기공사기간 : 20 . . ~20 . . (개월간)

구분	성명	등급	투입일자																																	개월	비고
			2020	2021											2022												2023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책임	○○○	특급																																	32	예시
보조	○○○	-																																		
보조	○○○	-																																		
비상주	○○○	-																																		

※ 참여감리원의 명단(성명)을 기입하여야 함.

[참고자료]

신규 업체등록[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

가. 업무처리 단계

1 개인회원 가입 ⇒ 2 등록신청 ⇒ 3 등록신청 온라인서류 제출 ⇒ 4 조달청 승인

나. 단계별 세부 절차

단계별	구분	세부 절차
1단계	사업자용 인증서 발급 신청	①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 입찰, 전자세금계산서 등 대부분 업무에 사용 가능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 및 발급 (일반적으로 매년 110,000원) · **한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1577-8787 · **코스콤**(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www.tradesign.net): 1688-2370 ②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금융결제원에서 인증서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발급 및 보관 (매년 4,400원) ③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 인증사업자(기업은행,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스마트폰 앱에 인증서 발급 및 보관 (매년 4,400원, 한시적 무료) ※ ②,③ 인증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별도 발급 필요(시중은행에서 발급)
2단계	개인회원 가입	① 개인회원 등록(본인 명의 개인인증서) ② 로그인 → 이용자관리 → 조달업체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 이용약관 동의 후 → 계속 진행(클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고유식별정보수집에 관한 확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확인 : 각 동의합니다(클릭)
3단계	등록 신청	① 등록분야 : 공급물품, 제조물품, 공사, 용역 등 ② 정보입력 분야 가. **공통입력 정보**: 기본정보, 대표자 정보, 입찰대리인(필요시), 접수관련정보 나. **공급물품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급물품** * 물품을 제조하지 않고 단순 공급(유통)하는 경우 다. **제조물품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장정보** + **제조물품(직접생산용역)** * 직접 생산시설을 갖추고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라. **일반건설면허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사.용역.기타업종** * 건설업면허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마. **전문건설면허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사.용역.기타업종** + **전문업종.주력분야** * 전문건설면허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바. **용역업종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사.용역.기타업종** * 엔지니어링.SW개발.의료기 판매업 등을 보유한 경우 ③ **인증서송신**: 송신버튼 클릭 → 공동인증서 서명 → 등록신청 ▪ 개인사업자인 경우 전자서명 시 간편인증 방식과 공동인증 방식 선택하도록 나옴
4단계	온라인 제출서류	① 증빙 원본서류 스캔파일 전환 → 첨부파일 추가 → 전송 가. **제조물품 신청업체**: 공장정보관련 서류, 공장임차계약서, 4대보험관련서류 등 나. **일반건설면허 신청업체**: 업종 등록증, 업종등록수첩 등 다. **전문건설면허 신청업체**: 업종 등록증, 업종등록수첩 등 라. **용역업종 신청업체**: 관련협회 허가증 등 마. (기타) **입찰대리인 신청**: 재직증명서, 4대보험관련서류 **지사 등록 신청**: 지사등록 이행각서, 법인인감증명서
5단계	조달청 승인	① 담당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및 서류 확인 → 이상 없는 경우 승인 처리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